

교원인사기본규정

시행일: 2024.07.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에게 적용되는 인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원의 종류 및 적용범위)
-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구분된다.
 - ② 본 규정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비전임교원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③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되며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 ④ 본교의 연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⑤ 본교의 정책사업 추진 및 산학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전담하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소속) 교원은 각 대학(원), 대학(원)의 학과(부), 학부, 연구원(소) 등 단위부서 또는 본부부서에 소속된다.

제2장 교원윤리

제4조(교원윤리) 교원은 교육·연구자로서 본교의 창학이념과 교육목표, 미래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행위 규범을 지향한다.

1. 교원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한도에서 본교의 명예와 공적가치를 존중하고 우선해야 한다.
2. 교원은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및 본교 학칙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교원은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교원은 학생에게 창학정신과 미래비전에 입각해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지도한다.
5. 교원은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6. 교원은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교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와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복무와 연구진흥

제5조(교원의 의무) ① 교원은 교내에 근무하면서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교원은 매년 제1항을 포함한 성과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연차보고서(Progress Report)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년트랙 전임교원: 연간 15시간 (학기당 1강좌 이상 강의)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연간 24시간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강의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3. 임상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책임강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연구년) ① 교원의 연구성과를 높여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년제도를 시행한다.
② 연구년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해외여행) ① 교원이 연구 및 기타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교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총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외부겸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예외) ① 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이때 사외이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②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지능정보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총장은 제1항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제2항에 따라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본교와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⑦ 교원의 겸직 허가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교내겸직) ① 총장은 학문연구 또는 학교발전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에게 교내겸직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원의 교내겸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원의 창업) ① 교원은 창업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교원의 창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신분보장

제12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종료일로 한다.

② 학문발전이나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본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정년은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정년의 기간은 만 7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거나 종신까지로 할 수 있으며 정년연장 및 종신보장의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3조(휴직)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 ·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 · 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 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14조(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1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13조 제1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1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13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13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기간,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13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13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4조 제1항 2호, 제4호부터 제10호에 따른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휴직교원의 신분 및 복직, 면직조치) ① 휴직기간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교원은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복직일 30일 전까지 총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④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복직신고하지 않거나 복직신고는 하였으나 복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직조치 할 수 있다.

제16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연봉 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직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 교원이 출산을 사유로 휴직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90일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 육아를 사유로 휴직한 교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을 따른다.

④ 본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파견) ① 교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고, 해당 파견이 연구과제 수주 등 본교의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우 총장은 교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과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교육, 연구, 산학협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② 제13조(휴직) 제1항의 신청 휴직사유에 해당될 뿐 제17조(파견) 제1항의 파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견을 허가할 수 없다.

③ 교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파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④ 파견 신청 교원은 파견사유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 파견이 본교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견신청서(별지 1)

2. 파견기관의 파견 요청서

3. 소속 학과(부)장 및 대학(원)장의 의견서

4. 산학협력단장 또는 관련 부서장의 의견서

5. 파견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제반 서류

⑤ 파견 사유나 목적이 소멸하면 해당 교원은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⑥ 파견 교원은 파견기간 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 후 15일 이내에 파견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파견 교원의 지위와 처우) ① 파견 교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파견기관의 보수가 본교의 보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파견 교원은 파견기간 중에도 본교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며 파견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③ 파견 교원에게는 책임강의시간을 면제하되, 학과의 요청으로 강의를 담당할 경우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파견 교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18조(의원면직의 제한) ① 총장은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21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동조 제2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자체 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21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④ 총장은 성폭력 사건의 피신고인인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리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퇴직) ① 총장은 재직 중인 교원이 정년 전에 퇴직을 원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직위해제 및 징계

제20조(직위해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의 4할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총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⑤ 총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1호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⑦ 총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21조(징계)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 또는 본교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교원 징계요청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처 감사팀의 조사를 거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되,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또는 인권센터의 처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위원회 또는 부서의 조사를 거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징계 양정에 관한 기준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및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제22조의2(징계의 시효) ①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절도, 사기, 유용 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등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주의 및 경고) ① 총장은 교원윤리의 차원에서 볼 때 잘못이 인정되는 하나 징계사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 교수윤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에게 동일한 사유로 주의 또는 경고(불문(경고) 포함)가 2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보칙) ①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 재임용, 승진, 업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임상 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의 내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교원인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3조 제1항 제11호는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전임교원 파견신청서

전임교원 파견신청서

신 청 자	소 속	대학(원)		전공(학과)
	성 명			직 급

파견 내용	파견기관		직 위	
	소재지			
	파견기간	2000.00.00 ~ 2000.00.00. (년 개월)	파견기관 처우	연 월 월 월 기타 월
파견 항목 (해당란에 ✓표시)	<input type="checkbox"/>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과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교육, 연구, 산학협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 국내·외 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 해당 파견이 연구과제 수주 등 본교의 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우		

파견 요청 사유	1. 파견 허가 필요성 2. 파견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파견허가 기관의 적합성
파견의 기대효과	

상기 교원의 파견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_____ (인)

학과(부)장: _____ (인)

소속부서장: _____ (인)

경희대학교 총장 귀하